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07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0	추미애의원	2025. 4. 25.	2025. 9. 2.
	2213157	백선희의원	2025. 9. 22.	2025. 11. 27.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3.24.)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절(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u></p> <p><u>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u> <u>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u> <u>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u> <u>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u> <u>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u> <u>다.</u></p>